서류확인 및 접수확인자	담당	책임자

퇴직급여 지급신청서(DC, 기업형IRP)

20 년 월 일

1. 가입자정보

기업명	우리노인요양원	퇴직연금 계좌번호		제도구분	☐ DC ☐ 기업형IRP
성명		생년월일		임원여부	☐ 근로자 ☐ 임원
입사일자		중간정산일자		퇴직급여 입금총액*	

*퇴직급여 입금총액 :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전체 퇴직금으로, 현재 입금된 총액과 잔여 부담금의 합계 금액을 작성

2. 지급정보

퇴직일자			예약지급일*	
지급형태	☐ 개인형IRP(의무)	현물이전**	☐ 신청 (보유상품 '해지 없이' IRP로 이전) ※ 뒷면 유의사항 서명 필수 ☐ 미신청 (보유상품 '해지 후' IRP로 이전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	
	☐ 입출금계좌	예외사유	☐ 만 55세이후 퇴직 ☐ 300만원이하 퇴직금 지급 ☐ 가입자 사망 ☐ 한시적 체류자격외국인의 출국	
잔여부담금***	☐ 없음			
	☐ 있음 (금액 : _____원)		☐ 연동출금 신청(사전에 약정된 경우) ☐ 미신청(기업별도입금)	
중간정산 특례 적용 (합산과세) ****	당해 연도 이전에 중간정산(중도인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합산과세 적용 ☐ 합산과세 미적용	
	당해 연도에 회사 또는 타금융기관에서 지급 받은 퇴직금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하나은행 중도인출 내용은 자동 적용)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합산과세 적용 필수)	
기업반환신청 *****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퇴직 ☐ 국민연금 전환금: _____원 ☐ 단시간근로자 1년 미만 퇴직(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미만) 제외주수: _____주 ☐ 임원 퇴직급여 한도금액 : _____원 ※임원 퇴직급여 한도금액확인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지급시 상품매도기간을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신청시 상품을 매도하여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예약지급일에 지급합니다.
**현물이전은 당행 개인형IRP로 급여이전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예약지급일 지정 및 잔여부담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잔여부담금 미입금시 지급처리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특례 적용 (합산과세) 이란 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을 합산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근무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소득세를 재산출한후 기존에 납부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출세액-기납부세액=금번 납부세액)
*****기업반환신청은 기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른 계좌로 수령 요청시 기업반환계좌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금정보

개인형IRP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입출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4. 추가정보 [선택사항]

근속 제외 · 가산월수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 산정시 제외·가산월수 있는 경우 기재 ☐ 제외월수() ☐ 가산월수()		
지급 지연시 가입자 동의	본인은 사용자(회사)와 합의에 의하여 법정지급기한(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경우에만 작성) 가입자 :		
개인적립금 과세제외 신청	☐ 과세제외 신청(「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공제확인서」 필수 제출) ☐ 과세제외 미신청 입출금계좌로 지급시 또는 '13.3.1이전 납입한 개인적립금이 있을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제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단독청구	☐ 업체 폐업 ☐ 기타 (사용자 지급거절 등)	영업점 본인확인	
기업 반환 증빙서류 미제출시	본인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하나은행 퇴직연금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모두 회사에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증빙서류제출 어려운 경우 작성, 본인확인으로 갈음) 가입자 :		

본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 내용 및 가입자의 퇴직 내용, 퇴직금 계산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업명 : 우리노인요양원 가입자 :

※ 인감은 퇴직연금 거래신고 인감 날인

5-14-0037(2-1) (2025.09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하나은행

[현물이전 유의사항(1페이지 현물이전 신청 시 필수 기재)]

① 현물이전 시 퇴직급여 지급완료 전일자의 평가금액으로 퇴직 소득이 확정되어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② 개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물이전 처리됩니다.
③ 기업으로 반환금액 발생 시 은행이 지정한 상품매도순서(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도됩니다.
※ 현금성자산으로 매도 후 반환금액만큼만 기업으로 반환

구분	매도금액	비고
임원퇴직급여 한도 초과	평가금액-임원퇴직급여	투자상품의 경우 105% 매도
국민연금 전환금	(국민연금 전환금+산출세금) X 105%	

④ 현물이전 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현물이전 선택 가이드

구분	추천방식	유의사항
IRP 유지 예정 고객	현물이전 (보유상품 '해지 없이' 그대로 이전)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현물이전 후 만기 유지 시 약정이자 지급 단, 만기 전 해지 시 일반중도해지이율 적용되므로 유의
IRP 해지 예정 고객	현금이전 (보유상품 '해지 후' 이전)	정기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가입자 : 서명 또는 (인)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급여지급 처리 지연시 지연보상금 지급 안내]

■ 은행의 퇴직연금 계약서(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에 의거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연보상금은 급여지급 신청일(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며, 급여지급 신청 금액에 지연기간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단,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다른 경우 5영업일)
** 지연기간이 14일 이내 연 10%, 지연기간이 14일 초과 : 연 20%

[제출서류]

1. 타 금융기관으로 받는 경우	타 금융기관 IRP 통장사본(가입확인서)
2. 중간정산 특례 적용(합산과세)	회사(또는 타금융기관)에서 중간정산 시 발생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퇴직자 기업 반환	아래 양식 중 한가지 1) 사업장 가입자명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근로복지공단] 3)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상기의 서류 제출시 퇴직근로자의 자격취득일(입사일) 및 상실일(퇴직일) 기재 필수
4. 개인적립금 과제 제외 신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공제확인서
5. 가입자 단독청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 본인의 퇴직사실 증명서류
6. 사망 퇴직하는 경우	1) 대표수익자 지정 합의서(은행양식) 2) 대표수익자 퇴직급여 수령계좌 통장사본(입출금계좌) (단, 대표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통장사본) 3)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확인서(필요시) 4) 상속인 전원의 실명증표 (전원 방문시) 5) 미방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날인 필수) 6)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